

제253회 영등포구의회
2024년도 제1차 정례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임헌호 의원 대표발의】



2024. 6. 20.

행 정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경 과

의안 제343호로 2024년 5월 31일 임헌호 의원 외 3명으로부터 발의되어 2024년 6월 1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

2. 제안이유

주민자치위원회 당연직 고문과 관련하여 지역 선거구에서 선출된 구의원 외에 비례대표로 선출된 구의원도 포함하는 것으로 변경함으로써 구의원의 위원회 참여 규정을 정비함.

3. 주요내용

당연직 고문에 비례대표 선출 구의원을 포함(안 제17조 제1항)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12조

나. 예산조치 : 필요시 반영

다. 입법예고(2024. 5. 17. ~ 5. 21.) : 의견없음

5. 검토의견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비례대표 구의원을 거주지 동(洞)의 “위원회 당연직 고문”에 포함될 수 있도록 명문화하기 위해 발의된 안건으로,

-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17조제1항(구성 등)에서 지역구에서 선출된 구의원은 선거구에 속한 동(洞)의 당연직 고문이 되고, 비례대표로 선출된 구의원은 거주지 동(洞)의 당연직 고문이 될 수 있도록 규정함.

- 검토 결과
 - 「공직선거법」 제20조1)에 따라 지역구지방의회의원은 선거구 단위로 선거하고, 비례대표자치구의원은 자치구 단위로 선거하고 있는바, 본 조례의 “해당 지역 선거구에서 선출된 구의회 의원”을 당연직 고문으로 두고 있는 제17조제1항은 지역구지방의회의원에만 한정되어 있어, 자치구 단위로 선거하는 비례대표자치구의원에 대한 사항은 미비한 실정임.

 - 따라서 이번 일부개정은 비례대표자치구의원이 그 직에 있는 동

1) 제20조(선거구) ①대통령 및 비례대표국회의원은 전국을 단위로 하여 선거한다. ②비례대표시·도의회원은 당해 시·도를 단위로 선거하며, 비례대표자치구·시·군의원은 당해 자치구·시·군을 단위로 선거한다. ③지역구국회의원, 지역구지방의회의원(지역구시·도의회 및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당해 의원의 선거구를 단위로 하여 선거한다. ④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을 단위로 하여 선거한다.

안 거주지 동(洞)에 한하여 당연직 고문이 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주민자치위원회의 활성화와 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는 등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 또한, 「지방자치법」 제12조, 제14조²⁾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³⁾ 에 근거하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자치구 자치사무임으로 상위법률에 저촉되는 사항은 아니라고 할 것임.

- 2) 제12조(사무처리의 기본원칙) ① 지방자치단체는 사무를 처리할 때 주민의 편의와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조직과 운영을 합리적으로 하고 규모를 적절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을 위반하여 사무를 처리할 수 없으며, 시·군 및 자치구는 해당 구역을 관할하는 시·도의 조례를 위반하여 사무를 처리할 수 없다.
- 제14조(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배분기준) ① 제13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로 배분하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13조제2항제1호의 사무는 각 지방자치단체에 공통된 사무로 한다. ② 제1항의 배분기준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3) 제10조(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 ① 법 제14조제1항의 배분기준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는 별표 1*과 같다. 다만, 법령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 지방자치법 시행령 [별표 1]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제10조제1항 관련)

구 분	시·도 사무	시·군·자치구 사무
2.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 다. 읍·면·동사무소의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	읍·면·동사무소의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 지원	읍·면·동사무소의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

참 고 자 료

1 지방자치법

제12조(사무처리의 기본원칙) ① 지방자치단체는 사무를 처리할 때 주민의 편의와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조직과 운영을 합리적으로 하고 규모를 적절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을 위반하여 사무를 처리할 수 없으며, 시·군 및 자치구는 해당 구역을 관할하는 시·도의 조례를 위반하여 사무를 처리할 수 없다.

제14조(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배분기준) ① 제13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로 배분하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13조제2항제1호의 사무는 각 지방자치단체에 공통된 사무로 한다. ② 제1항의 배분기준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0조(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 ① 법 제14조제1항의 배분기준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는 별표 1과 같다. 다만, 법령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 지방자치법 시행령 [별표 1]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제10조제1항 관련)

구 분	시·도 사무	시·군·자치구 사무
2.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 타. 읍·면·동사무소의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	읍·면·동사무소의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 지원	읍·면·동사무소의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

3

공직선거법

제20조(선거구) ①대통령 및 비례대표국회의원은 전국을 단위로 하여 선거한다. ②비례대표시·도의회는 당해 시·도를 단위로 선거하며, 비례대표자치구·시·군의원은 당해 자치구·시·군을 단위로 선거한다. ③지역구국회의원, 지역구지방의회의원(지역구시·도의회 및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당해 의원의 선거구를 단위로 하여 선거한다. ④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을 단위로 하여 선거한다.

제253회 영등포구의회
2024년도 제1차 정례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영등포구청장 제출】



2024. 6. 20.

행 정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경 과

의안 제350호로 2024년 5월 31일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4년 6월 1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

2. 제안이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회관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정비하여 자치
회관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주민자치위원 등 관련자에 대한 교육, 연수 등에 대한 지원(안 제7조)
- 나. 자치회관 사용료 및 수강료 감면 기준 변경(안 제10조·별표 2)
- 다. 위원 연임 시 교육 이수 의무 규정 삭제(안 제17조)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해당 없음

다. 협의사항

1) 규제심사: 신설·강화되는 규제사무 없음

2) 부패영향평가·성별영향분석평가·인권영향평가: 해당 없음

라. 입법예고(2024. 4. 25. ~ 5. 16. / 21일간) 결과:

의견 없음

5. 검토의견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 구(區) 자치회관 운영 여건을 반영하여 일부 조항을 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7조제9항(운영)에서는 주민자치위원 등 운영관련자에 대한 교육, 연수 등 지원 규정을 신설함.
 - 안 제10조(사용료 등)에는 감면 기준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
 - 안 제17조(구성 등)에는 위원회 구성 시, 위원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위촉할 수 있게 규정함.
 - 안 별표1에서는 수강액 상한액을 30,000원에서 35,000원으로 변경함
 - 안 별표2에서는 사용료 및 수강료 감면대상의 감면비율을 전액 면제에서 아래와 같이 변경함.

감 면 대 상	감면비율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또는 그 가족	100%이내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된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의한 저소득의 모자 또는 부자 가정	
아동복지사업 지침에 의한 소년·소녀가장	
다둥이 행복카드를 소지한 2자녀 이상 가정의 부모와 자녀 (막내가 18세 이하)	50%이내
「노인복지법」에 의한 경로우대자	
우수 자원봉사자증 소지자	

○ 검토 결과

- 본 조례안은 ▲자치회관 운영관련자 교육, 연수 등 지원 근거 마련 ▲자치회관 사용료 및 수강료 감면대상 및 감면기준 변경 ▲주민자치위원 위촉 시, 위원선정위원회¹⁾ 심의 과정을 추가하기 위한 것임.
- 자치회관 수강료 상한액은 지난 '16.3.24. 이후 약 8년간 동결되어 있었기에 이번 일부개정으로 물가 상승률 등을 참고하여 35,000원으로 상한액을 확대하는 것이며, 별표 2 관련 감면대상을 추가하고, 감면비율을 조정하여 효율적인 자치회관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임.
- 서울시에서는 자치구별로 운영 상황을 고려하여 자치회관 사용료 및 수강료 감면대상과 감면비율을 정하고 있으며, 감면비율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7조(구성 등) ④ 동장은 위원 선정 시 공정성, 투명성 확보를 위해 각 동 여건에 따라 동장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며, 위원선정위원회의 위원장은 동장이 된다.

같은 경우 현재 영등포구 및 관악구²⁾를 제외하고는 23개 자치구에서 10%~100%의 감면비율을 형성하고 있어 본 조례안에 따라 감면대상별로 차등을 두어 변경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사료됨.

- 한편, 현행 조례 및 개정안에 따라 주민자치위원 위촉 절차 방법은 다음과 같으며, 개정안은 주민자치위원 선정 시 위원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치게 함으로써 위원 위촉 방식의 체계를 공고히 한다는 측면이 있을 것임. 아울러, 현재 서울시 자치구 중 우리 구(區)를 포함하여 노원구, 도봉구, 동대문구에서 위원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으나 조례에 명확히 위원 위촉 시 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명시한 곳은 없기에 본 개정안의 의미가 있다고 할 것임.

현 행	개 정 안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display: inline-block;">동장 위원 추천</div> ➔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display: inline-block;">구청장 위촉</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display: inline-block;">동장 위원 추천</div> ➔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display: inline-block; text-align: center;">위원선정 위원회 심의</div> ➔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display: inline-block;">구청장 위촉</div>

- 아울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법」 제 12조 및 제13조³⁾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 범위

2) 감면대상 전액면제 서울시 자치구: 영등포구, 관악구

3) 제12조(사무처리의 기본원칙) ① 지방자치단체는 사무를 처리할 때 주민의 편의와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조직과 운영을 합리적으로 하고 규모를 적절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을 위반하여 사무를 처리할 수 없으며, 시·군 및 자치구는 해당 구역을 관할하는 시·도의 조례를 위반하여 사무를 처리할 수 없다.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

에 속하는 것으로 자치법규로 정할 수 있음.

- 다만, 우리 위원회에 동일한 조례로 다른 내용이 담긴 두 건의 조례안이 회부되어 있는바, 본 조례안과 다른 한 건의 조례안을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⁴⁾을 제안하는 것이 입법의 경제성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 4) 대안(代案): 발의 또는 제출된 의안을 위원회 심사과정에서 전면적으로 또는 체계를 달리하여 수정할 경우 심사 중인 의안(원안)을 폐기하고 대신에 위원회의 안(새로운 안)을 제안하는 것임.

참 고 자 료

1 지방자치법

제12조(사무처리의 기본원칙) ① 지방자치단체는 사무를 처리할 때 주민의 편의와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조직과 운영을 합리적으로 하고 규모를 적절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을 위반하여 사무를 처리할 수 없으며, 시·군 및 자치구는 해당 구역을 관할하는 시·도의 조례를 위반하여 사무를 처리할 수 없다.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